

## 기관추천 특별공급

### ■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3.18.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대상자, 군인, 중소기업근로자 등)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.  
(단, 이주대책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)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	청약통장 필요 없음
-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체육유공자 등	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### ※ 해당기관(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) 예시

수원보훈지청(국가유공자), 해당 시·도(장애인)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북한이탈주민), 국가보훈처(장기복무 제대군인), 국방부(10년 이상 복무군인), 경기지방중소기업청(중소기업근로자), 공무원연금관리공단(공무원), 통일부(납북피해자), 대한체육회(우수선수) 등

### ■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함,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[2016.03.23(수)]에 접수장소(건본주택)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]
- 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에 의해 공급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‘10.2.23)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 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  
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(철거민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)

### 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·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.  
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·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, 중복 청약 시,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